일반사무관리업무 개별 위탁계약서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인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(이하 "갑"이라 한다)와 일반사무관리회사인 하나펀드서비스(주)(이하 "을"이라 한다)는 기 체결된 "일반사무관리 포괄 위탁계약(이하 "본계약"이라 한다)" 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별계약을 체결한다.

- 다 음 -

1. 대상 집합투자기구

구분	내용
펀드설정일	2019-10-18
집합투자기구명	하나UBS대한민국1호증권모투자신탁(주식)
일반사무관리보수율	0 bp

2.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"갑"과 "을" 쌍방이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 부씩 보관한다.

2019년 10월 15일

"갑"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82
회 사 명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주식회사
대표이사 이 원 종

"을"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
회 사 명 하나펀드서비스 주식회사
대표이사 오 상 영